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78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6월 1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이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‘노동관련 단체’가 노동자가 조직한 ‘노동단체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, ‘노동단체’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 등을 “비영리법인·단체”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.
- 지원대상을 단체·법인으로 수정함(안 제3조).
- 지원범위를 단체·법인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에게”를 “해당하는 단체·법인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총 연합단체인”을 “총연합단체인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”를 “시장은 제3조의 단체·법인이”로 하고, 같은 항의 호 “5.”를 “3.”로 한다.

<p>4.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4. 제3조제1호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4. 제3조제1호----- ----- -----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	--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·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
3.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”를 “시장은 제3조의 단체·법인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제1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서울특별시</u>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 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서울특별시</u>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·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총연합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</u> 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<u>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</u> 3. 그밖에 <u>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</u> <p>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시장은 제3조의 단체·법인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제3조</u>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3조제1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